

Question

건설현장 전직원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별도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식대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요? 또한 급여명세서에 전직원 비과세 식대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3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을 받으려고 명목상 급여명세서에 표기), 현장 전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때에도 안전관리자의 식대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접수번호 : 10797446]

Answer

1.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안전관리자의 식대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6호)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1번 항목에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 급식비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근일수에 따라 급식비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금품으로 해석하여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uestion

통신시설을 긴급대피방송 및 각종 안전보건교육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CCTV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 수행여부 등을 감시하고자 하는데 위의 두가지 경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접수번호 : 10786045]

Answer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6호, 2005. 3. 17)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과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통신시설을 비상사태 발생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긴급대피 및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 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수행여부 등을 감시하도록 설치하는 CCTV의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단, 이 경우도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야 함).

Question

건설공사에서 법적인 안전관리비 계상이 100원이 되어야 하나,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5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도급사는 50원에 대한 비용만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만약 50원에 대한 안전관리비만을 원도급사가 집행할 경우 법적인 제재는 없는지요? [접수번호 : 10782345]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자는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안전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적절한 안전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접수번호 : 10794878]

Answer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위반시 의무주체인 사업주 및 근로자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부의 각종 점검 및 감독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과되는 행정질서벌로서 법 위반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3가지로 구분·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30조제1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위반 등
 - 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31조제1항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의무) 위반 등
 - ③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30조제4항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지도를 받을 의무) 위반 등
3. 아울러 2005. 6. 1부터는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차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노동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코너에서 발췌한 자료임.